

인권헌장

The Charter of Human Rights



지엠비코리아 주식회사

	인권헌장	문서번호	MP-06-L01
		개정번호	1
		개정일자	2026.6.1
		페이지	3/5

제1조. 개요

(1) 인권헌장 제정목적

지엠비코리아(주)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지엠비코리아(주)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stitution),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한다.

(2) 인권헌장 적용범위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지엠비코리아(주) 임직원(임원과 직원, 자회사 및 사내 도급업체 근로자 등 지엠비코리아(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또한, 지엠비코리아(주) 임직원은 공급망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엠비코리아(주)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 기본 원칙

(1) 차별금지

지엠비코리아(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2) 근로조건 준수

지엠비코리아(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인권헌장	문서번호	MP-06-L01
		개정번호	1
		개정일자	2026.6.1
		페이지	4/5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3) 인도적 대우

지엠비코리아(주)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지엠비코리아(주)는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5)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지엠비코리아(주)는 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6) 산업안전 보장

지엠비코리아(주)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7) 지역주민 인권 보호

지엠비코리아(주)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지 자유를 보호한다.

(8) 고객 인권 보호

지엠비코리아(주)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인권헌장	문서번호	MP-06-L01
		개정번호	1
		개정일자	2026.6.1
		페이지	5/5

(9) 생활임금

지엠비코리아(주)는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며, 생활임금에 대한 평가는 국가 및 도시가 제공하는 연도별 생활임금 결정 공시를 기준으로 한다.

(10)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지엠비코리아(주)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고, 인권 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교육 및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부칙

1. 본 헌장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본 헌장은 2026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